

의안 번호	제3608호
----------	--------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04월 08일 배강민, 이희성 의원
-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04월 14일
- 다. 상 정 일 자 : 2025년 04월 18일
- 라. 의 결 일 자 : 2025년 04월 18일

2. 개정이유

- 긴급 방법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 지급의 근거 신설(안 제5조 제1항 제5호)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주문사항

- 본 조례는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수당 지급의 법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례 개정시 유사한 법정 보조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기에 먼저 상위법의 법률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부결함.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없음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해·재난 실종자 및 가출인 수색, 재해복구, 각종 행사 질서유지 등 시장 및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5. (생략)</p> <p>② (생략)</p>	<p>제5조(지원 등) ①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재해·재난 실종자 및 가출인 수색, 재해복구, 각종 행사 질서유지 등 시장 및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